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시내버스 정류소명을 광고 수단으로 전환하여 주된 명칭과 병기 명칭의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에 유상 판매를 통해 세수 증대
- 나. 창출된 수익은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물 개선 등에 사용하여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 향상 기여

## 2.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에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다.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2. 6. 9. ~ 6. 29.) 결과 :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를 “관리,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란 사용료를 내고 시내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강장,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내버스정류소의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u>관리</u>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1조(목적) ----- ----- ----- ----- <u>관리,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u>----- ----- -----.</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란</u> <u>사용료를 내고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강장,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u></p> <p><u>제8조의2(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 ①</u> <u>시장은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u>②</u>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u>③ 시내버스정류소의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이 따로 정한다.</u></p>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시내버스정류소 병기명칭의 유상판매를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 정류소 1개소당 약 12만원 × 400개소 = 45백만원(3년간)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4. 작성자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심순보(☎ 2133-2268)